

② 개정조문(영 별표1)

개정 전	개정 후
지방세법 시행령 [별표 1] 〈제3종〉 <u>< 신설 ></u>	지방세법 시행령 [별표 1] 〈제3종〉 <u>275. 「의료기기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</u>
<u>275.</u>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〈제4종〉 <u>103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·판매·사용·이동사용 허가</u> <u>104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</u> <u>208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</u> <u>209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</u> <u>< 신설 ></u>	<u>276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</u> 〈제4종〉 <u>103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·판매·사용(소지·취급 포함)·이동사용 허가</u> <u>104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</u> <u>208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,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</u> <u>< 삭제 ></u> <u>213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</u>